(對外祕)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제218회 이사회 자료

2023. 1. 19.

법인사무국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제218회 이사회 회의순

○ 사 회 : 이계안 이사장

1부. 예배

- 사도신경 ·· 다같이【1】
- 찬송 - 384장 - 다같이【2】
- 기도 ·· 김지훈 이사
- 성경봉독 - 빌립보서 4장 6절~7절 - 다같이【3】
- 주기도문 ·· 다같이【3】

2부. 이사회 회의

1. 개 회 선 언 ·· 이계안 이사장
2. 전차 회의록 보고 ·· 박재순 국장【5】
3. 법 인 보 고 ·· 박재순 국장【7】
4. 평택대학교 현안보고 이동현 총장직무대행【별첨1】
5. 회 무 처 리
   - 1호 정관 변경의 건 ······························ 【9】
   - 2호 규정 개정 건 ······························ 【11】
   - 3호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건 ······························ 【38】
   - 4호 기타안건 ······························ 【39】
6. 폐 회 ·· 이계안 이사장

사 도 신 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4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통일 434)

All the way my Saviour leads me

F. J. Crosby, 1875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7)

인도와 보호

ALL THE WAY: 8.7.8.7.8.7.8.7.8.7.
R. Lowry, 1875

보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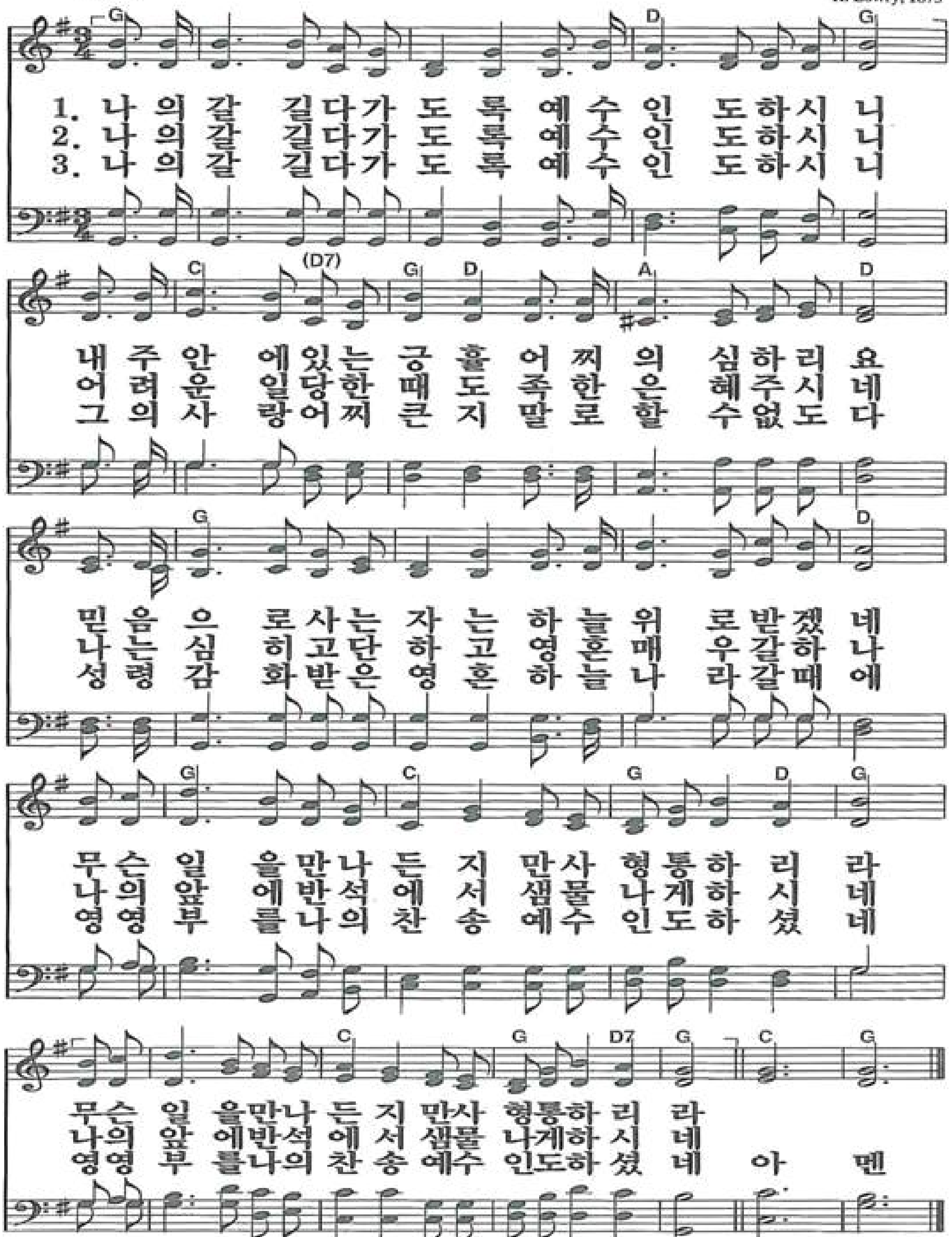
✔ 성경말씀 : 빌립보서 4장 6절~7절

6절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기 도 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법 인 보 고

임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이사장	이사	감사	비고
인원	1	8	2	합계 11명

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사무직	기능직	경비직	미화원	비고
학교법인	**5**	**-**	**-**	**-**	**합계: 5명**

건물 현황

구분		면적	재단소유면적	비고
평택대 교내		교육연구시설	80,556.32㎡	20동
평택대 교외		근린생활시설(승두리)	1,148.42㎡	2동
		관 사	154.46㎡	
		축사, 창고(퇴계원리)	**309.08㎡**	**2동**
교육용 건물 계			**82,168.28㎡**	
서울 본관	지하~3층	2,748.92㎡(831.54평)	2,748.92㎡	사무실 6실 상가 3실
	4층~11층	5,635.68㎡(1,704.78평)	872.82㎡	전체 79세대 중 법인소유 14실
	소계	8,384.6㎡(2,536.3평)	3,621.74㎡	43.2%
서울별관	3층 건물	513.21㎡(155.24평)	513.21㎡	상가 12실
평택라임	4층 건물	454.30㎡(137.42평)	454.3㎡	원룸 15세대
수익용 건물 계			**8,210.99㎡**	
건물 합계			**90,379.27㎡**	

토지 현황

*	지 번	지 적		비고
1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605번지	131,062.4㎡	39,646평	
2	경기도 안성시 승두리 782-16외 3필지	6,641㎡	2,009평	
3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리 산4-3외 1필지	36,364㎡	11,000평	
교육용 토지 계		**174,067.4㎡**	**52,655평**	
1	서울시 신문로 2가 89-27번지	2,148.7㎡	650평	
2	서산시 산동리 30번지 외 4필지	11,866㎡	3,590평	
3	평택시 소사동 137-76외 7필지	3,313㎡	1,002평	
4	평택시 용이동 457-8	265.7㎡	80.4평	
수익용 토지 계		**17,593.4㎡**	**5,322평**	
토지 합계		**191,714.8㎡**	**57,994평**	

1호, 정관 변경 및 시행세칙 개정 건

1 정관 변경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 사유

1. 정관 변경 건

1) 개정 사유

(제22조) 이사장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 현행법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의 임기를 5년을 초과할 수 없고(우리 학교법인 정관은 그 임기를 4년으로 정함)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사장의 임기 또한 무제한 중임이 가능하여 법인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저해하고 학교법인의 사유화의 원인이 된다는 문제 제기 발생

□ **사학혁신지원사업 핵심과제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임기를 한 차례(4년+4년, 최대 8년)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장이 보장된 임기 동안 책임 경영함으로써 학교법인의 독선적 운영을 방지하고자 함**

2) 정관 변경 전후

개정 전	개정 후(의견 수렴 후)
제22조(이사장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②생략 ③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2019.10.25.>	제22조(이사장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②생략 ③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5., 2023.01.00.>

2. 정관 시행세칙 개정 건

1) 개정 사유

▢ 대학의 학칙 및 교·직원의 인사, 보수 관련 규정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규정 제·개정에 있어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학사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총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정관시행세칙 개정 전후

개정 전	개정 후(의견 수렴 후)
제3조(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정관 제27조 제2항 제6호의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칙 및 학교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의 승인에 관한 사항. 단,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한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이사장의 권한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제3조(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정관 제27조 제2항 제6호의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칙 및 **<u>학교의 인사, 보수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의 승인에 관한 사항.<개정 2023.01.00></u>**

2호, 규정 개정 건

1 평택대학교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제정	개정	폐기	총계
0	10	0	**10**

2 규정 제·개정·폐기 목록

순번	규정명	개·폐일	시행일	구분	페이지
1	강의 평가 규정	2023.00.00.	2023.00.00.	개정	
2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2023.00.00.	2023.00.00.	개정	
3	직제규정	2023.00.00.	2023.00.00.	개정	
4	평택대학교 학칙	2023.00.00.	2023.00.00.	개정	
5	계절학기에 관한 규정	2023.00.00.	2023.00.00.	개정	
6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2023.00.00.	2023.00.00.	개정	
7	포상 규정	2023.00.00.	2023.00.00.	개정	
8	규정류관리 규정	2023.00.00.	2023.00.00.	개정	
보고	교원인사 규정	2023.00.00.	2023.00.00.	개정	**1월 중순 처리**
	교원업적평정 규정	2023.00.00.	2023.00.00.	개정	

3 규정 제·개정·폐기 내용

1. 강의평가 규정 개정(안) : 교무연구처 수업팀

□ 강의평가 공개 규정 개정 관련 경과 내역

○ 강의평가 공개

-. 배경 : 2019 대학기관평가인증 개선사항
　　2021학년도 제2대 총학생회 사업(강의평가 공개 즉각 시행 요구)

-. 목적 : 강의평가 공개로 강의 질 향상 및 수강신청시 정보 도움

○ 시행관련 진행 내역

- 2019.05.02.(목). 기관인증평가 개선사항(강의평가 공개)
- 2019.09.19.(목). 강의평가위원회 회의(강의평가 공개 논의)
- 2021.11.25.(목). 강의평가위원회 회의(강의평가 공개 시행 1차 결의)
  (타대학운영현황 : 공개의무8개, 공개원칙2개, 공개선택2개, 별도정함1개, 없음1개)
- 2022.04.04.(월). 강의평가위원회 회의(강의평가 공개 시행 최종 결의)
- 2022.06.07.(화). ~ 06.12(일)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홈페이지)
- 2022.06.16.(목). 교무위원회 회의(재검토)
- 2022.10.17.(월). 강의평가위원회 회의(강의평가 공개 안건 재심의 결의)
- 2022.11.21.(월). 학생대표기구(비상대책위원회) 의견수렴(시행요구)
- 2022.12.06.(화). 교무위원회 회의(재심의-결의)
- 2022.12.26.(월). 이사회 회의(재검토)

□ 강의평가 결과 공개(안)

가. 지난 강의평가위원회(2021.11.25) 주요 결의내용 보고

1)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1주일 전부터 수강신청 종료시까지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함 (정정 결의)
2) 강의평가 결과 공개 항목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함
   ① 구분(교양/전공), ②학수번호, ③교과목명, ④담당교수, ⑤직전 학년도 수강학생수
   ⑥직전 학년도 강의평가 응답 학생 수, ⑦직전 학년도 강의평가 등급
3) 공개등급 범위와 “미흡‘ 용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함

나. 최근 3학기 본교 강의평가 결과 요약표

평가등급	해당 원점수	강좌 수(비율)		
		2020-2학기	2021-1학기	2021-2학기

탁월(Excellent)	45이상 ~ 50이하	351 (37.5%)	375 (47.2%)	424 (51.2%)
우수(Good)	40이상 ~ 45미만	442 (47.3%)	308 (38.8%)	338 (40.8%)
보통(Common)	30이상 ~ 40미만	139 (14.9%)	103 (13.0%)	64 (7.7%)
미흡(Poor)	30미만	3 (0.3%)	8 (1.0%)	2 (0.3%)
계		935 (100%)	794 (100%)	828 (100%)

※ 지난 회의 의견
- 공개등급 범위 : ①4등급 모두 공개 ②탁월, 우수 2단계 등급만 공개
- 미흡 대체 용어 : 보통 미만

□ 강의평가 규정 개정(안)

가. 강의평가 명칭 일원화에 따른 개정

나. 강의평가규정 현행·개정안 대비표(지난 회의시 개정된 내용 포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택대학교 교원업적평정 규정 제8조에 근거한 교원의 강의평가 시행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의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교원 인사 및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택대학교 교원업적평정 규정**에 근거하여** 교원의 강의평가 시행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의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교원 인사 및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
제3조(평가시기 및 방법) ① 강의평가는 중간 점검 및 최종 강의 평가로 나누어서 평가한다.	**제3조(평가시기 및 방법)** ① 강의평가는 **중간 강의 평가 및 기말 강의평가**로 나누어서 평가한다. **단, 중간 강의평가 점수는 학기별 최종 강의평가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수정)
제4조(평가유형 및 설문 문항) ② 중간 점검 및 최종 강의 평가 설문 문항은 별첨의 설문지로 평가를 시행한다.	**제4조(평가유형 및 설문 문항)** ② **중간 강의평가 및 기말 강의평가는** 별첨의 설문지로 **시행한다**.
제6조(평가결과 활용 및 공개) ① 전임교원의 평가 결과는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며, 2개 학기 연속으로 백분위 75점 이하인 경우 교수학습지원센터 주관의 교수방법 개선 프로그램을 1회 이수해야 한다. ② 비전임교원의 평가 결과는 강의의 질 개선	**제6조(평가결과 활용 및 공개)** ① 전임교원의 평가 결과는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며, 2개 학기 연속으로 **백점 만점 환산점수** 75점 이하인 경우 교수학습지원센터 주관의 교수방법 개선 프로그램을 1회 이수해야 한다. (수정)

현행	개정안
을 위하여 소속학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2개 학기 연속으로 백분위 70점 이하인 경우 재임용하지 않는다. ③ 강의평가 결과는 강의 개선 및 각종 평가, 우수 강의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 민원이 발생한 강좌 및 평가 하위 분포의 교원은 교무연구처장이 별도로 상담할 수 있다.	② 비전임교원의 평가 결과는 강의의 질 개선을 위하여 소속학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2개 학기 연속으로 백점 만점 환산점수 70점 이하인 경우 재임용하지 않는다. (수정) ③ 강의평가 결과는 강의 개선 및 각종 평가, 우수 강의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민원이 발생한 강좌 및 평가 하위 분포의 교원은 교무연구처장이 별도로 상담할 수 있다. (좌동) ④ 강의평가 결과는 해당 과목이 개설되는 다음 학년도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 1주일 전부터 수강신청 종료 시까지 공개한다. (신설) ⑤ 제4항에 따른 공개 방법, 공개 항목 등 세부사항은 강의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별첨1] 평택대학교 강의평가(수업만족도조사) 설문지(이론 수업 유형)	[별첨1] 평택대학교 기말 강의평가 설문지 : 이론 수업 유형 (수정)
[별첨2] 평택대학교 강의평가(수업만족도조사) 설문지(이론/실습 병행 수업 유형)	[별첨2] 평택대학교 기말 강의평가 설문지 : 실험·실습·실기수업 유형 (별첨3를 별첨2로 변경)
[별첨3] 평택대학교 강의평가(수업만족도조사) 설문지(실기/실습 수업 유형)	[별첨3] 평택대학교 기말 강의평가 설문지 : 통합 수업 유형(이론+실험·실습·실기) (별첨2를 별첨3로 변경)
[별첨4] 평택대학교 강의평가(수업만족도조사) 설문지(온라인/블랜드 수업 유형)	(삭제)
[별첨5] 평택대학교 강의평가(수업만족도조사) 중간 점검 설문 양식	[별첨4] 평택대학교 중간 강의평가 설문지 (별첨5를 별첨4로 변경)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에 따른 강의평가 결과 공개는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타대학 조사자료-강의평가 공개 관련 조사보고

2021.11.17 / 2023.1.9

1. 주변 대학의 강의평가 결과 공개 조사

구분	공개의무	공개원칙	공개선택 (할 수 있다)	별도정함	언급없음
대학수	10	3	2	1	4
대학명	건국대 강남대 세종대 경기대 협성대 호서대 나사렛대 한신대 동덕여대 상명대	한세대 한서대 우송대	수원대 성결대	선문대	평택대 가천대 한림대 한양대
비율(%)	50.0%	15.0%	10.0%	5.0%	20.0%

※ 강의평가 결과 공개 관련 내용

번호	대학교명	공개여부	공개 관련 내용	공개목적 (기간)
1	건국대	등급 공개	①강의평가 결과는 학생과 교강사에게 매학기 공개한다. ②학생에게는 평가등급(Excellent, Good, Common, Poor)과 학습량 등을 공개하되, 강의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매학기
2	강남대	표준 점수 공개	표준점수를 해당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수강신청 1주일전부터 수강신청 종료시까지 종합전산망에 공개	수강신청 1주일전부터 종료
3	세종대	공개	평가결과는 학생에게 수강신청 시 강좌선택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수강신청시 강좌선택 정보 제공
4	경기대	공개	강의평가결과는 Kutis(Web)를 통하여 전 항목의 평가결과를 학생들에게 공개하되,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강신청 기간에 공개
5	수원대	공개 선택	강의평가 결과는 학생의 수강신청 시 강좌선택의 자료 및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강좌선택의 자료
6	협성대	공개	①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학습 선택권과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업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②공개내용으로는 교과목, 담당교수,수강정보, 수업평가 결과 등을 원칙으로 한다.	학습선택권 강화 등
7	한세대	공개	강의평가 결과는 학생의 수강신청 시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수강신청시

		원칙	위하여 본교 학사행정시스템에서 학생에게 한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세한 공개방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8.26.)	참고자료
8	성결대	공개 선택	강의평가 점수는 수강 신청시,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에게 공개할 수 있다.,	수강신청시
9	한서대	공개 원칙	강의평가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하되 공개방법, 공개범위, 공개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강의평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0	호서대	공개	강의평가 결과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좌선택의 자료로 공개한다.	강좌선택의 자료
11	나사렛대	공개	소정의 기간에 강의평가 결과를 학생들에게 전산 공개하여, 수강신청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강신청 등 참고자료
12	선문대	별도 정함	강의평가는 무기명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강의평가 실시 및 공개 등 세부사항은 교무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3	한신대	공개	공개를 통한 강의의 질적 향상 도모 및 학생의 수업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말강의평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① 홈페이지 e-class 개설강의시간표에 과목별로 항목별 분포도를 공개한다. ② 공개기간은 1차 수강신청기간 한 달 전부터 학기초 수강신청변경기간까지로 한다.	수강신청기간 1달전부터 변경기간
14	가천대	없음	*수업만족도평가규정은 있으나 공개 관련 조항은 없음	-
15	동덕여대	공개	① 강의평가 결과 공개는 전체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② 강의평가 결과 공개범위는 교과목 강의평가 점수, 학과 평균점수, 계열 평균점수로 한다.	
16	우송대	공개 원칙	수업평가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각 호를 준수한다. ① 교과목의 평점, 평균점수 공개 ② 다음학기 수강신청 기간 중 공개 ③ 당해학기 개설강좌 ④ 본 대학교원, 재학생, 수강신청 대상자 전체	
17	한양대	없음	강의평가는 지침에는 없고 강의평가 공문 안내 시 공개함. 강의평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최종결과 점수만 조회	전체년도 학기
18	한림대	없음	강의평가 규정, 지침에 없음 학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 전체 학내구성원한테 교과목의 평가점수, 서술형 의견 공개	1년 규 정 개 정 중
19	상명대	공개	강의평가열람 및 보고] 소속단과대학별의 백분위 점수를 개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년간의 평가점수를 학생에게 공개한다.	시행세칙

2. 평택대학교 강의평가

가. 2020학년도 강의평가 결과

본교 강의평가는 10개 항목을 5점 척도(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안 그렇다 2점, 매우 안 그렇다 1점)로 평가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교수집단의 평균 및 최고, 최하점수는 아래와 같음.

구분	만점	평균점수	최고점수	최하점수	교수방법개선 프로그램 이수 점수
교육중심형 (50명)	100	85.7	92.63	75.88	75.0 이하
연구중심형 (79명)	50	42.8	49.51	37.53	37.5 이하

1) 교원업적평정규정에서 상한점수를 교육중심형은 100점, 연구중심형은 50점으로 하고 있으며, 산정식은 다음과 같음

구분	교육중심형 (100점 만점)	연구중심형(50점 만점)	비고
1개학기	원점수 * 2	원점수	원점수 만점 : 50 10개 항목 5단계 척도 평가
2개학기	1학기 원점수 + 2학기 원점수	(1개 학기 원점수 + 2학기 원점수) /2	

나. 강의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과목(강의평가규정 제25조)

1) 담당교수가 없는 강좌 및 담당 교수가 직접 강의하지 않는 강좌
2) 졸업논문
3) 학생군사교육단 개설 강좌(군사학)
4) 외부기관 등에 의해 위탁 교육 형태로 운영되는 강좌
5) 기타 과목 특성에 따라 총장이 정한 강좌 본교 강의평가는 10개

→ 현재 PTU취창업역량개발, PTU인성멘토링(1학기) 교과목만 제외하고 평가하고 있음

다. 평가평가 결과의 교원업적평가 반영은 교원업적평정 규정에 다름

※ 강의평가규정에는 없으나 교원업적평정규정에 있는 내용

- 수강생 15인 이하의 강의평가는 전체강의평가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 수강생 15인 이하 교과목, 졸업논문, 대학원 과목 등은 평정에 미반영하며, 해당 과목이 없는 교원은 전체 전임교원 평균 점수를 반영한다.
- 강의평가결과 평정산정방법 : 수업평가 백분위점수 X 0.6 (상한점수 : 60)

3. 본교 강의평가 결과 공개 방법(안)

1안). 강의평가 점수(원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등급으로만 공개

등급	연구중심형(50점)			교육중심형(100점)		
	평가점수	인원	비율(%)	평가점수	인원	비율(%)
매우우수 (Excellent)	45.1~50.0	10	12.7%	90.1~100	6	12.0%
우수 (Good)	40.1~45.0	58	73.4%	80.1~90.0	41	82.0%
보통 (Common)	35.1~40.0	11	13.9%	70.1~80.0	3	06.0%
미흡 (Poor)	35.0이하	0	0%	70.0이하	0	0%
합계		79	100%		50	100%

1) 전년 또는 직전 학기의 동일 교과목 평가결과를 수강신청 기간 중 공개 (전체 교과목 평균점수 아님)
2) 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등급으로만 공개
3) 전공, 비전공으로 나누어 등급을 부여 할 수 있음
4) 등급 구분을 점수가 아니라 상위 20%, 중위 80%, 하위 20%의 상대적 개념으로 정할 수 있음

* 평가결과 공개와 별도로 2개 학기 연속으로 백분위 75점 이하인 경우 교수학습지원센터 주관의 교수방법 개선 프로그램을 1회 이수. 2개 학기 연속으로 백분위 70점 이하인 경우에는 재임용 탈락. (강의 평가규정제6조)

* **백분위 75점 이하** : 연구중심형 37.5점 이하, 교육중심형 75.0점 이하로 적용되고 있음

2안). 원점수와 더불어 평균점수, 표준편차 공개

연구중심형 (만점 : 50점, 평균점수 42.8)			교육중심형 (만점:100점, 평균점수 : 85.7)		
구분	인원(명)	비율(%)	구분	인원(명)	비율(%)
평균점수 이상	57	72%	평균점수 이상	26	52%
평균점수 이하	22	28%	평균점수 이하	24	48%
합계	79	100%	합계	50	100%

3안) 원점수만 공개

4안) 원하는 교수에 한하여 원점수만 공개

4. 최근 강의평가위원회 회의 내용

일자	회의 내용	비고
2021.05.17	• 학생들이 강의평가시 최저점(각 항목당 1점)을 부여할때는 사유를 작성하도록 하기로 결의함 • 정혜정 위원장이 실무진과 협의 후 다 객관식으로 할 것인지 등 방법을 찾아보겠음	정혜정 김정원 김성진 백주련 최승희 김순용 박진임 이루사
2021.01.25	• 백주련 위원이 강의평가 설문지 수정(안)과 유학생 대상 설문지 신설(안)을 설명하면서 최종본을 수업팀에 넘기고 위원들에게 검증을 받아 최종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함. • 조승래 팀장이 교수들께서 피드백 주면 2월 중순 개강 전에 보자고 제안하자 만장일치 동의함.	선재원 김성진 박진임 백주련 이루사 최승희 한정우(연) 황정희(연)

＊ 현재 강의평가위원 : 장희선, 박진임 김순용 이루사 최승희 김정원 김성진 백주련

제6조(평가결과활용및공개) ① 전임교원의 평가 결과는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며, 2개 학기 연속으로 백분위 75점 이하인 경우 교수학습지원센터 주관의 **교수방법 개선 프로그램**을 1회 이수해야 한다.

<담당> : 교수학습지원센터 김보라 연구원 8721, 2019부터 담당

- 강의평가 결과 50점 만점에 37.5점 이하인 교수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해당 교수의 강의 영상을 해당 수업 학생들과 교수 본인에게 별도의 설문지로 평가 받은 후 외부 전문가에게 강의 컨설팅 의뢰

  ＊ 강의 영상은 1학기 해당자의 경우 2학기 강의를 교수, 학생 동의하에 촬영함(설문지 받음)
  줌 수업의 경우는 사전에 교수에게 녹화 부탁
  비대면 수업시 설문지는 구글 설문지를 E-class로 공지
- 외부업체에서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며, 보고서를 해당 교수에게 준다.
- 년간 2~3명 해당
- 규정에 1회 이수해야 한다고 되어있어, 계속 해당 될시 강제성이 없는 문제 발생

2.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무연구처 교무팀

[개정 사유]

1) 특임교수는 특별한 직무를 맡기고자 채용하는 교수로 해당 분야의 경력이 충분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바, 현행 65세 이하 임용 원칙은 이에 맞지 않아 개정함.
2) 특별한 분야의 경력이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기에 적합한 채용제도로 개정함.
3) 특임교수는 가르치는 교수의 역량보다 다른 분야(경영, 운영, 기획 등)의 역량이 더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기에 특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총장도 추대권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함.

변경전	변경후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4조(임용시기 및 임용기관 등) ① ~ ③ <생략> ④ 비전임교원의 임용연령은 만 6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교수와 석좌교수는 예외로 한다.	**제4조**(임용시기 및 임용기관 등) ① ~ ③ <생략> ④ 비전임교원의 임용연령은 만 6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교수와 석좌교수, **특임교수**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12.00)**
제5조(임용절차) ① 비전임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나 석좌교수와 명예교수는 예외로 한다.	**제5조**(임용절차) ① 비전임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나 석좌교수와 명예교수, **특임교수**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12.00)**
제26조(추대절차 및 재임용) ① 특임교수의 추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학과(또는 피어선칼리지)에서 추대 2. 대학(원)장이 추대 3. 교무연구처장이 추대 **<신설>**	**제26조**(추대절차 및 재임용) ① 특임교수의 추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학과(또는 피어선칼리지)에서 추대 2. 대학(원)장이 추대 3. 교무연구처장이 추대 **4. 기타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총장이 추대(신설 2022.12.00)**

3. 직제 규정 개정(안) : 기획평가처 기획예산팀

<table>
<tr><td colspan="2">[개정 사유]
초빙교원뿐만 아니라 다른 비전임교원에게도 직책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특별한 분야의 경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td></tr>
<tr><td>제4조(교직원)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교원과 일반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1. ~ 2. 생략
3. 교원은 학생을 교수하고 지도하며, 별도의 직책 또는 직무가 부여된 경우 이를 담당해야 한다. 단, 비전임교원의 직책 및 직무는 부속 또는 부설기관에 한해 <u>비전임 교원 중 초빙교수만이 할 수 있다.</u>(개정 2021.12.27.)</td><td>제4조(교직원)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교원과 일반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1. ~ 2. 생략
3. 교원은 학생을 교수하고 지도하며, 별도의 직책 또는 직무가 부여된 경우 이를 담당해야 한다. 단, 비전임교원의 직책 및 직무는 부속 또는 부설기관에 한하며, 필요한 경우 <u>비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2022.12.00)</u></td></tr>
</table>

4. 평택대학교 학칙 개정(안) : 교무연구처 수업팀

1) 학부 계약학과 정원 관련 조항 개정

<table>
<tr><th colspan="2">개정 사유</th></tr>
<tr><td colspan="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 제8조 제5항 개정(2017.6.20. 개정)에 의하여 학칙 제65조의 내용을 법률에 맞게 학생정원 기준을 개정하고, [별표3] 계약학과 입학정원 및 수여학위명은 협약서에 표기된 표에 따라 개정하나 현재 학부는 미운영중이라 별도의 [별표3]은 미기재</td></tr>
<tr><th>변경전</th><th>변경후</th></tr>
<tr><td>제65조(정원) ① <u>산업 등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한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⑤항에 의하여 학생수 및 학생정원을 따로 둔다. 다만 개설학부(과)는 정규과정 개설학부(과)로 제한한다.</u>
② <u>계약학과의 </u>학과별 정원은 별표3<u>에 의한다.</u> (신설 2017.02.16)</td><td>제65조(정원) ① <u>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생수 및 학생정원을 따로 둔다. 단,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 할 수 없다.</u> (개정 2022.00.00.)
② <u>계약학과 운영시</u> 학과별 정원은 별표3<u>으로 따로 정한다.</u>(신설 2017.02.16., <u>개정 2022.00.00)</u>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u></td></tr>
</table>

5. 계절학기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무연구처 수업팀

개정사유
► 시기의 계절학기 명칭 통일성 ► 개설과목 내용에 명확한 구분 설명을 추가함. ► 폐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추가함. ► 강사료 지급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추가함.

변경전	변경후
제2조(시 기) 계절학기는 여름 또는 겨울방학 기간 중에 개설한다.	**제2조**(시 기)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 기간 중에 개설한다.**(개정2022.00.00)**
제3조 (생략)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개설과목) ① 개설과목은 교육과정상 전과목으로 하며, 개설희망과목신청을 받아 5명 이상인 경우 개설하거나, 5명 미만인 경우 교무연구처장의 승인을 통하여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2019.06.24., 2021.06.29) ② (삭제 2003.10.29.) ③ 현장실습 교과목은 6학점으로 제한하며, 담당부서의 요청으로 개설될 수 있다.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신설 2016.02.29.)	**제4조**(개설과목) **① 개설희망과목은 신청학년도 교과과정에 준하여 신청을 받아 5명 이상인 경우 개설할 수 있다. 단, 5명 미만인 경우 담당 부서장(처장)의 승인 하에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2019.06.24., 2021.06.29., **2022.00.00**) ② (삭제 2003.10.29.) ③ 현장실습 교과목은 6학점으로 제한하며, 담당부서의 요청으로 개설될 수 있다.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신설 2016.02.29.)
제5조(수강신청 및 폐강) ① 수강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수강신청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폐강할 수 있다. (개정2014.12.15.) ②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변경 및 취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담당부서의 절차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가능하다. (신설 2016.02.29.)	**제5조**(수강신청 및 폐강) ① 수강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등록한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수입(수강료) 대비 지출(강사료)이 많은 교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 단, 담당 부서장(처장)의 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폐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2014.12.15., **2022.00.00**) ②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변경 및 취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담당부서의 절차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가능하다. (신설 2016.02.29.)
제6조~제7조 (생략)	**제6조~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강사료지급) ① 계절학기의 강사료는 당해년도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해당과목의 수강학생이 납입한 수강료만을 강사료로 지급한다. (개정 2005.03.08., 2014.12.15. 2014.12.15.)	**제8조**(강사료지급) ① 계절학기의 강사료는 당해년도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 최종 등록한 수강인원이 개설기준 미충족일 때, 담당 부서장(처장)의 개설 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수강학생이 납입한 수강료만을 강사료로 지급한다. (개정 2005.03.08., 2014.12.15. 2014.12.15., **2022.00.00**)

6.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무연구처 수업팀

개정사유
► 학점교류의 이수범위에 개설과목 기준 변경 ► 야간학과 우리대학 해당없음 삭제.

변경전	변경후
제2조(학점교류의 이수범위) 학점교류의 이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중 또는 방학중에 개설되어 있는 전체과목으로 한다. 2.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졸업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예.체능 계열은 동일계열에 한한다. 4. 야간학과 학생은 야간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에 한한다.(개정 2009.06.12) 5. 본 대학교에서 기 취득한 과목 중에서 교류대학의 이수과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단 재수강(C+이하 과목)은 학과장이 인정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성적의 인정은 별도 규정 의한다. (개정 2016.08.25.) 6. 교류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 대학교의 상급학년에 개설된 경우에는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예외규정은 제6조에 따른다.	**제2조**(학점교류의 이수범위) 학점교류의 이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과목은 신청학년도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00.00)** 2.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졸업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예.체능 계열은 동일계열에 한한다. 4. **삭제**(개정 2009.06.12.**, 삭제 2022.00.00**) 5. 본 대학교에서 기 취득한 과목 중에서 교류대학의 이수과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단 재수강(C+이하 과목)은 학과장이 인정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성적의 인정은 별도 규정 의한다. (개정 2016.08.25.) 6. 교류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 대학교의 상급학년에 개설된 경우에는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예외규정은 제6조에 따른다.

7. 포상규정 개정(안) : 기획평가처 기획예산팀

개정 사유
► 포상관련 규정 조항 자구수정 ► 포상의 종류를 교내와 교외로 구분하고 포상대상자 추천 절차를 명시함. ► 포상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포상이력 평정반영에 대한 근거규정 추가

변경전	변경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택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시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6조(표창) 및 직원인사규정 제29조(표창) 내지 제31조(표창 수위자의 특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택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시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9조(포상)** 및 직원인사규정 제29조(표창) 내지 **제30조**(표창**의 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0.00)**
제2조(대상) 포상은 본 대학교 교직원과 기타 학교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대상) 포상**대상자는 공적조사에 사전 동의하고** 본 대학교 교직원과 기타 학교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개정 2022.00.00)**
[신설 2022.00.00]	**제2조의 2(포상대상 제한) 포상대상의 제한은 관계 법령인 상훈법에 의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22.00.00)**
제3조(포상의 종류) ① 본 대학교 포상은 "공로포상", "제안포상", "근속포상", "기금유치 포상" 등으로 구분한다. 1. ~ 4. 생략 5. (신설 2022.00.00) ② 생략	**제3조**(포상의 종류) ① 본 대학교 포상은 "공로포상", "제안포상", "근속포상", "기금유치 포상" **등의 "교내포상"과 외부기관에서 수여하는 "교외포상"** 으로 구분한다.**(개정 2022.00.00)** 1. ~ 4. 현행과 같음 **5. "교외포상"은 교육부 등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포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한다.(신설 2022.00.00)**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포상의 신청) ① 각 부서의 장은 포상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직원에 대하여 공적조서(별지서식 1호)를 첨부하여 기획평가처 기획예산팀으로 포상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04.21., 2016.02.26., 2019.06.24.) ② 포상을 신청할 때에는 교원은 교무처장을 경유하고, 직원은 기획평가처장을 경유하	**제4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5.04.21., 2016.02.26., 2019.06.24., **2022.00.00.**) **1. 교내포상은 각 부서의 장이 포상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직원에 대하여 공적조서(별지서식 1호)를 첨부하여 인사담당 부서로 추천하고 인사담당 부서는 이를**

변경전	변경후
여 인사위원회에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개정 2015.04.21., 2019.06.24.)	**조사 및 검토하여 포상공적심사위원회에 상신한다. (신설 2022.00.00)** **2. 교외포상은 인사담당 부서에서 수여기관의 추천기준에 부합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별지서식2호에 공적 사실과 평판을 확인하여 포상공적 심사위원회 상신한다.** **(신설 2022.00.00)** ② **포상 추천 대상자 선정은 포상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의 최종 승인으로 확정하되 근속포상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04.21., 2019.06.24., **2022.00.00.**)
제5조(포상의 심의) 포상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근속포상은 예외로 한다.	**제5조(포상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산하에 둔다. (개정 2022.00.00)** **② 위원회의 구성은 재적 인사위원중 호선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인사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위원장이 된다.** **(신설 2022.00.00)**
제6조(포상 시기) 근속포상은 매년 1월 시무식 때 시행하고 그 밖의 포상은 필요한 때에 시행한다.	**제6조**(포상 시기) 현행과 같음.
제7조(평정 반영) ① 포상자가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인사고과평정에 반영하고, 직원인 경우에는 직원인사고과 평정에 반영한다. ② 총장의 추천을 받아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경우와, 기타 외부로 받은 포상의 경우에도 같다.	**제7조**(평정 반영) **교직원의 포상 이력은 인사평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개정 2022.00.00)** ② **(삭제 2022.0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8. 평택대학교 학칙 개정(안) : 교무연구처 수업팀

1) 학부 계약학과 정원 관련 조항 개정

<table>
<tr><th colspan="2">개정 사유</th></tr>
<tr><td colspan="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 제8조 제5항 개정 (2017.6.20. 개정)에 의하여 학칙 제65조의 내용을 법률에 맞게 학생정원 기준을 개정하고, [별표3] 계약학과 입학정원 및 수여학위명은 협약서에 표기된 표에 따라 개정하나 현재 학부는 미운영중이라 별도의 [별표3]은 미기재</td></tr>
<tr><th>변경전</th><th>변경후</th></tr>
<tr><td>제65조(정원) ① <u>산업 등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한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⑤항에 의하여 학생수 및 학생정원을 따로 둔다. 다만 개설학부(과)는 정규과정 개설학부(과)로 제한한다.</u>
② <u>계약학과의 </u>학과별 정원은 별표3<u>에 의한다. </u>
(신설 2017.02.16)</td><td>제65조(정원) ① <u>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생수 및 학생정원을 따로 둔다. 단,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 할 수 없다.</u> (개정 2022.00.00.)
② <u>계약학과 운영시</u> 학과별 정원은 별표3<u>으로 따로 정한다.</u>(신설 2017.02.16., <u>개정 2022.00.00)</u>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u></td></tr>
</table>

9. 규정류 관리 규정 개정(안) : 기획평가처 기획예산팀

개정 사유
► **제8조**(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 규정과 세칙 등의 제·개정 절차에 대한 자구수정과 규정내 세부 조항 시행을 위한 세칙, 내규 등의 제정 및 개·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변경전	변경후
제8조(**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 ①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 및 제청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20.08.24.) ② 세칙, 내규, 준칙의 제정과 개폐는 업무소관부서장과 기획평가처장의 검토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단, 직제, 교직원인사,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규정, 재무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04.23., 2019.06.24.)	**제8조**(**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① **학칙을 제외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 및 제청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개정 2020.08.24.,**2022,00,00)** ② **규정내 조항의 세부 시행사항을 별도로 정하는** 세칙, 내규, 준칙의 제정과 개·폐는 **상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업무 소관 부서장과 기획평가처장의 검토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단, 직제, 교직원인사, 보수 및 퇴직금**과** 재무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련된 세칙, 내규, 준칙**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4.23., 2019.06.24., **2022.0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보고1.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 교무연구처 교무팀

개정 사유
►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근로기준법」위반사항 시정지시에 대한 교원 과반수노동조합의 소급동의 전제조건(합리적인 개정) 후속조치 일환으로 개정 전 규정과 현행규정의 차이를 조정하여 승진 및 재임용 최소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경과조치

○ 2022.03.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 2022.03.15.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에 따른 조치 요청
○ 2022.03.23. 민주교수노동조합 규정 개정 소급동의
○ 2022.03.30. 교무팀 2022-10,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에 대한 조치 결재
○ 2022.04.01.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으로 시정지시 조치사항 제출
○ 2022.04.04. 학교법인으로 조치결과 보고
○ 2022.04. ~ 2022.07. 규정 개정(안) 검토
○ 2022.08.10. 규정 개정(안) 설명 및 의견 청취-민주교수노동조합(교원 과반수 노동조합)
○ 2022.09.07. 규정 개정(안)에 대해 민주교수노동조합 자체 의견수렴 결과 수취
○ 2022.09.15. 교원인사위원회「교원인사 규정」개정(안) 심의
○ 2022.10.05. 교원업적평정개선위원회「교원업적평정 규정」개정(안) 심의
○ 2022.10.12. 교원업적평정개선위원회「교원업적평정 규정」개정(안) 심의
○ 2022.10.19. 규정 개정(안) 1차 설명회(전임교원 22명 참석)
○ 2022.11.02. 교원업적평정개선위원회「교원업적평정 규정」개정(안) 심의
○ 2022.11.10. 규정 개정(안) 2차 설명회(전임교원 8명 참석)
○ 2022.11.23.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교원인사 규정 보칙 제51조(정년트랙전환)

<table>
<tr><th>변경전</th><th>변경후</th></tr>
<tr>
<td>
제28조(재임용 기준) ①~③ <생략>
④ 2차 재임용 심사기준

1. 정년트랙 조교수
<table>
<tr><td>구 분</td><td>재임용 최소 기준</td></tr>
<tr><td>업적평정 점수</td><td>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690점 이상(60%)</td></tr>
<tr><td>필수 연구업적</td><td>국내 1급 학술지 2편 이상</td></tr>
</table>

2. 정년트랙 부교수
<table>
<tr><td>구 분</td><td>재임용 최소 기준</td></tr>
<tr><td>업적평정 점수</td><td>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690점 이상(60%)</td></tr>
<tr><td>필수 연구업적</td><td>국내 1급 학술지 3편 이상</td></tr>
</table>

3. <생략>

제33조(승진기준) ①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한 교원에 대하여 “교원업적평정규정”에 의거하여 승진소요 기간 동안 업적 결과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필수연구업적 또는 필수업적은 승진소요기간 또는 승진소요학기로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부교수 승진최소기준
<table>
<tr><td>구 분</td><td>부교수 승진 최소기준</td></tr>
<tr><td>업적평정 점수</td><td>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805점 이상(70%)</td></tr>
<tr><td>필수 연구업적</td><td>단독 저자인 국내 1급 학술지 5편 이상</td></tr>
</table>
단, 신규임용 후 부교수 승진 전까지 합계 2년 이상의 행정보직경력이 있는 조교수는 필수 연구업적을 국내 1급 학술지 2편으로 한다.
</td>
<td>
제28조(재임용 기준) ①~③ <생략>
④ 2차 재임용 심사기준

1. 정년트랙 조교수 <개정 2022.00.00.>
<table>
<tr><td>구 분</td><td>재임용 최소 기준</td></tr>
<tr><td>업적평정 점수</td><td>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630점 이상(54.8%)</td></tr>
<tr><td>필수 연구업적</td><td>공동저자 포함 국내 1급 학술지 2편 이상</td></tr>
</table>

2. 정년트랙 부교수 <개정 2022.00.00.>
<table>
<tr><td>구 분</td><td>재임용 최소 기준</td></tr>
<tr><td>업적평정 점수</td><td>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630점 이상(54.8%)</td></tr>
<tr><td>필수 연구업적</td><td>공동저자 포함 국내 1급 학술지 3편 이상</td></tr>
</table>

3. <생략>

제33조(승진기준) ①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한 교원에 대하여 “교원업적평정규정”에 의거하여 승진소요 기간 동안 업적 결과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필수연구업적 또는 필수업적은 승진소요기간 또는 승진소요학기로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부교수 승진최소기준 <개정 2022.00.00.>
<table>
<tr><td>구 분</td><td>부교수 승진 최소기준</td></tr>
<tr><td>업적평정 점수</td><td>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730점 이상(63.5%)</td></tr>
<tr><td>필수 연구업적</td><td>공동저자 포함 국내 1급 학술지 4편 이상</td></tr>
</table>
단, 신규임용 후 부교수 승진 전까지 합계 2년 이상의 행정보직경력이 있는 조교수는 필수 연구업적을 국내 1급 학술지 2편으로 한다.
</td>
</tr>
</table>

변경전

2. 교수 승진최소기준

구 분	교수 승진 최소기준
업적평정 점수	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862.5점 이상(75%)**
필수 연구업적	단독 저자인 국내 1급 학술지 **4편** 이상

제 9장 보칙

제51조(정년트랙전환) ① 2017년 9월 1일 이전에 비정년트랙 (구)전임강사 또는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년트랙 교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1. 비정년트랙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조교수로 승진 후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2012년 7월 22일 전임강사제 폐지로 인한 조교수 자동 승진자 및 2012년 9월 이후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경우는 재직기간이 7년 이상인 자.
3. **교원인사규정 (2016.12.15.개정 이전 규정)의 다음의"교수 승진기준"**을 만족한 자

구 분	교수 승진 최소기준
업적평정 점수	**연평균 750점 이상**
필수 연구업적	**국내 1급 학술지 2편** 이상

② 2017년 9월 1일 이전에 비정년트랙 부교수로 신규임용된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년트랙 교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부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자.

변경후

2. 교수 승진최소기준 **<개정 2022.00.00.>**

구 분	교수 승진 최소기준
업적평정 점수	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780점 이상(67.8%)**
필수 연구업적	공동저자 포함 국내 1급 학술지 3**편** 이상

제 9장 보칙

제51조(정년트랙전환) ① 2017년 9월 1일 이전에 비정년트랙 (구)전임강사 또는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년트랙 교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1. 비정년트랙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조교수로 승진 후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2012년 7월 22일 전임강사제 폐지로 인한 조교수 자동 승진자 및 2012년 9월 이후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경우는 재직기간이 7년 이상인 자.
3. **교수 승진 최소**기준을 만족한 자 <**개정 2022.00.00**>

구 분	교수 승진 최소기준
업적평정 점수	**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780점 이상(67.8%)**
필수 연구업적	**공동저자 포함 국내 1급 학술지 3편** 이상

② 2017년 9월 1일 이전에 비정년트랙 부교수로 신규임용된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년트랙 교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부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자.
2. **교수 승진 최소**기준을 만족한 자 <**개정 2022.00.00**>

<table>
<tr><th>변경전</th><th>변경후</th></tr>
<tr><td>2. 교원인사규정(2016.12.15. 개정 규정)의 “교수 승진기준”을 만족한 자

<table>
<tr><td>구 분</td><td>교수 승진 최소기준</td></tr>
<tr><td>업적평정 점수</td><td>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862.5점 이상(75%)</td></tr>
<tr><td>필수 연구업적</td><td>국내 1급 학술지 4편 이상</td></tr>
</table>
③ 비정년트랙 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td>
<td><table>
<tr><td>구 분</td><td>교수 승진 최소기준</td></tr>
<tr><td>업적평정 점수</td><td>1,150점 만점 기준 연평균 780점 이상(67.8%)</td></tr>
<tr><td>필수 연구업적</td><td>공동저자 포함 국내 1급 학술지 3편 이상</td></tr>
</table>
③ 비정년트랙 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규정 제28조(재임용 기준) 제4항, 제33조(승진기준) 제1항, 제51조(정년트랙전환)의 최소기준 적용은 1년간 유예하며, 함께 개정하는 「교원업적평정 규정」이 적용 시행된 이후, 2024년 3월 1일자 재임용·승진 대상자부터 전체 교원에게 일괄 적용한다.
② 필수 연구업적 논문 편수는 「교원업적평정 규정」[별표2] 연구업적 평정 항목, 기준 및 평정과 주해, 「전임교원 재임용 및 승진임용 업적산정 세부지침」의 1. 재임용 필수업적 산정기준 환산율을 적용한다.</td></tr>
</table>

보고2. 교원업적평정규정 개정(안) : 교무연구처 교무팀

개정 사유
► [별표1] 교육업적 평정항목 중 수업시수 및 수업강좌수 산정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자 함

변경전

[별표 1] 교육업적 평정항목, 기준 및 평점(개정 2017.04.27., 2019.06.24. 2022.00.00.)

평정영역		평정항목	평정산정방법	상한점수			평정부서
				교육중심형	연구중심형	만63세교원형	
개인평가	교육내용및과정	수업 *필수	1. 수강생수 *주석 배점표 참조	20	10	30	수업팀
			2. 수업시수 *주석 배점표 참조	**50**	**20**	**50**	수업팀
			3. 수업강좌수 *주석 배점표 참조	**30**	**10**	**50**	수업팀
			4. 수업만족도조사(강의평가)결과 * 주석 배점표 참조	100	50	120	수업팀
배점한도				600 (90)	300 (40)	800 (90)	

주) 1~7. <생략>

8. 수강시수 및 강좌 수는 대학원을 포함하며, 1학기 산정 시 배점에 2를 곱하여 산정한다. 트랙별 산식은 아래표와 같다.(개정 2019.06.24., 2022.02.28.)

변경후

[별표 1] 교육업적 평정항목, 기준 및 평점(개정 2017.04.27., 2019.06.24. 2022.00.00.)

평정영역		평정항목	평정산정방법	상한점수				평정부서
				교육중심형	연구중심형	만63세교원형	**산학친화형**	
개인평가	교육내용및과정	수업 *필수	1. 수강생수 *주석 배점표 참조	20	10	30	**10**	수업팀
			2. 수업시수 *주석 배점표 참조	**60**	**30**	**60**	**30**	수업팀
			3. 수업강좌수 *주석 배점표 참조	**60**	**30**	**60**	**30**	수업팀
			4. 수업만족도조사(강의평가)결과 * 주석 배점표 참조	100	50	120	**50**	수업팀
배점한도				600 (**130**)	300 (**70**)	800 (**110**)	150 (**70**)	

주) 1~7. <생략>

8. 수강시수 및 강좌 수는 대학원을 포함하며, 1학기 산정 시 배점에 2를 곱하여 산정한다. 트랙별 산식은 아래표와 같다.(개정 2019.06.24., 2022.02.28., **2022.00.00.**)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구분	트랙 유형	학기당 기준 시수/강좌수	산정식
수업 시수	교육중심형 트랙	12	**((연간시수-연간기준시수)*4)+2, 50점 상한**
	연구중심형 트랙	9	**(연간시수-연간기준시수)*2, 20점 상한**
	만63세이상 트랙	12	**((연간시수-연간기준시수)*4)+2, 50점 상한**
	산학친화형	9	**(연간시수-연간기준시수)*2, 20점 상한**
강좌 수	교육중심형 트랙	4	**(연간강좌수-연간기준강좌수)*4, 30점 상한**
	연구중심형 트랙	3	**(연간강좌수-연간기준강좌수)*1.5, 10점 상한**
	만63세이상 트랙	4	**((연간강좌수-연간기준강좌수)*8)+2, 50점 상한**
	산학친화형	3	**(연간강좌수-연간기준강좌수)*1.5, 10점 상한**

* 기준시수 초과 여부 상관없이 산출식 적용

변경후

구분	트랙 유형	학기당 기준 시수/강좌수	산정식
수업 시수	교육중심형 트랙	12	**((연간시수-연간기준시수)*4)+15, 60점 상한**
	연구중심형 트랙	9	**((연간시수-연간기준시수)*4)+15, 30점 상한**
	만63세이상 트랙	12	**((연간시수-연간기준시수)*4)+15, 60점 상한**
	산학친화형	9	**((연간시수-연간기준시수)*4)+15, 30점 상한**
강좌 수	교육중심형 트랙	4	**((연간강좌수-연간기준강좌수)*4)+15, 60점 상한**
	연구중심형 트랙	3	**((연간강좌수-연간기준강좌수)*4)+15, 30점 상한**
	만63세이상 트랙	4	**((연간강좌수-연간기준강좌수)*4)+15, 60점 상한**
	산학친화형	3	**((연간강좌수-연간기준강좌수)*4)+15, 30점 상한**

* 기준시수 초과 여부 상관없이 산출식 적용

* **수업시수와 강좌수의 트랙유형별 점수를 산정식으로 산정하되, 마이너스(-)점수 발생 시 0점 처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개정 규정 중 [별표 1] 교육업적 평정항목, 기준 및 평점에서 수업 평정항목의 수업시수와 수업강좌수는 2023학년도 하반기 교원 업적평정부터 적용한다.

[변경전]

[별표 1] 교육업적 평정항목, 기준 및 평점(개정 2017.04.27., 2019.06.24.)

평정영역		평정항목		평정산정방법	상한점수 교육중심형	상한점수 연구중심형	상한점수 만63세교원형	평정부서
학과평가	교육프로그램및교육열정	교육역량향상프로그램 *필수		-학과 실행보고서 제출 -1건당 5점, 연2회 인정	10	10	10	학생지원팀
		해당학과의 취업률 *필수		-당해년도 2월 졸업자 -취업자(정규+비정규포함) -(취업생수/졸업생수)×10	10	10	10	취업진로팀
		해당년도 교육사업계획서 충실성 *필수		-매년초 학과교육 및 사업계획서	5	5	5	기획예산팀
		해당학과의 재학률 *필수		(정원내재학생수/입학정원)*30	30	30	30	학적팀
		해당학과의 중도탈락률 *필수		*주석 배점표 참조	15	15	15	학적팀
개인평가	교육내용및과정	강의계획서 제출 *필수		총배점*(준수과목/총과목)	30	20	30	수업팀
		강의계획서 개선 *필수		총배점*(준수과목/총과목)	20	10	20	수업팀
		강의이행상태 (휴강및결강) *필수		(감점) 무단결강 1회 –10점, 단, 보강한 경우 한 학기 1회, 총 2회 무감점	0	0	0	수업팀
		출석 관리의 적절성 *필수		10점:매주 입력 시 5점:입력기간 내 2회 이하 미입력시 0점:입력기간 내 3회 이상 미입력시	10	10	10	학적팀
		성적평가 엄정성 *필수		1. 성적평가결과의 피드백 제공 미준수 과목당 2점 감점	0	0	0	학적팀
				2. 학칙에서 정한 성적분포의 적정성 준수 20*(준수과목/총과목)	20	20	20	학적팀
		교수법 개선 *선택		-강의개선 프로그램 참여 1회 5점 -교수 콜로키움 참여 1회 5점 -교수법 개선 워크숍 참여 1회 3점 -교수법 개선 워크숍 강사 1회 10점 -중점수업(MOOC) 참여 1회 20점 -중점수업(FL, PBL) 참여 1회 10점 -CQI보고서 제출 과목당 10점	50	10	50	교수학습지원센터
		수업 *필수		1. 수강생수 *주석 배점표 참조	20	10	30	수업팀
				2. 수업시수 *주석 배점표 참조	50	20	50	수업팀
				3. 수업강좌수 *주석 배점표 참조	30	10	50	수업팀
				4. 수업만족도조사(강의평가)결과 * 주석 배점표 참조	100	50	120	수업팀
		온라인강의 *선택		-1과목 온라인 강의(블렌디드강의 포함) 제작 및 개설 시 10점 단, 동일과목으로 다음연도에 점수 반영이 되려면 강의 콘텐츠를 새로 촬영 및 제작을 해야함	20	20	20	수업팀
		특별강의 *선택		-평생·국제교육팀 1강좌 10점 -특강1회5점, 연2회 인정	10	0	10	각부서
	교육지도	학생상담		1. 학생 상담 지도 *필수 -1회 15점(연구트랙은 10점), 학기당 1인 1회 실시 후 입력	30	20	30	학생지원팀
				2. 상담개선 *선택 학생 상담 개선을 위한 워크숍 참여 1회 5점	10	10	10	학생생활상담센터
		특별지도	논문 지도 *필수	1. 논문지도 -석·박사 1명 5점 (연 4회 인정) -학사 1명 2점(상한 5명) -증명서제출	20	0	20	수업팀 대학원교학팀
			캡스톤디자인*필수	2. 캡스톤디자인 지도 팀당 10점	20	10	20	교육혁신센터
			창업지도 *필수	3. 창업 지도 -교내 창업 관련 지도 1건당 5점 -교외 창업 관련 지도 1건당 10점	20	10	30	창업지원센터

[변경전]

			취업지도 *필수	4. 취업 지도 취업자 1인 성공시 20점	40	0	100	취업진로팀
			역량프로그램 지도 *필수	- 보충학습지도 1건당 5점 - 비교과 프로그램 1건당 20점 최대 40점 - 자율학기 교과목 지도 1건당 50점/30점/20점/10점 (학점베이스)	100	40	100	각부서
		학생행사참여지도 *필수		-(감점) 불참 1건당 -5점 감점	0	0	0	학생지원팀
	교육행정	학내교육행정참여 *필수		-(감점) 불이행 1건당 -5점 감점	0	0	0	각부서
		대학행사 참여 *필수		-(감점) 불이행 1건당 -5점 감점 -성교육 미참석 1회당 –5점 감점	0	0	0	각부서
		학교 및 학과 홍보 *필수		-본인증명서 제출 -1건당 10점, 연2회 인정 -63세트랙은 1건당 20점	20	0	100	입학홍보팀
배점한도					600 (90)	300 (40)	800 (90)	

변경후

[별표 1] 교육업적 평정항목, 기준 및 평점(개정 2017.04.27., 2019.06.24., **2022.00.00.**)

평정영역		평정항목		평정산정방법	상한점수 교육중심형	상한점수 연구중심형	상한점수 만63세교원형	상한점수 산학친화형	평정부서
학과평가	교육프로그램및교육열정	교육역량향상프로그램 *필수		-학과 실행보고서 제출 -1건당 5점, 연2회 인정	10	10	10	**10**	학생지원팀
		해당학과의 취업률 *필수		-당해년도 2월 졸업자 -취업자(정규+비정규포함) -(취업생수/졸업생수)×10	10	10	10	**10**	취업진로팀
		해당년도 교육사업계획서충실성 *필수		-매년초 학과교육 및 사업계획서	5	5	5	**5**	기획예산팀
		해당학과의 재학률 *필수		(정원내재학생수/입학정원)*30	30	30	30	**30**	학적팀
		해당학과의 중도탈락률 *필수		*주석 배점표 참조	15	15	15	**15**	학적팀
개인평가	교육내용및과정	강의계획서 제출 *필수		총배점*(준수과목/총과목)	30	20	30	**20**	수업팀
		강의계획서 개선 *필수		총배점*(준수과목/총과목)	20	10	20	**10**	수업팀
		강의이행상태(휴강및결강) *필수		(감점) 무단결강 1회 –10점, 단, 보강한 경우 한 학기 1회, 총 2회 무감점	0	0	0	**0**	수업팀
		출석 관리의 적절성 *필수		10점:매주 입력 시 5점:입력기간 내 2회 이하 미입력시 0점:입력기간 내 3회 이상 미입력시	10	10	10	**10**	학적팀
		성적평가 엄정성 *필수		1. 성적평가결과의 피드백 제공 미준수 과목당 2점 감점	0	0	0	**0**	학적팀
				2. 학칙에서 정한 성적분포의 적정성 준수 20*(준수과목/총과목)	20	20	20	**20**	학적팀
		교수법 개선 *선택		-강의개선 프로그램 참여 1회 5점 -교수 콜로키움 참여 1회 5점 -교수법 개선 워크숍 참여 1회 3점 -교수법 개선 워크숍 강사 1회 10점 -중점수업(MOOC) 참여 1회 20점 -중점수업(FL, PBL) 참여 1회 10점 -CQI보고서 제출 과목당 10점	50	10	50	**10**	교수학습지원센터
		수업 *필수		1. 수강생수 *주석 배점표 참조	20	10	30	**10**	수업팀
				2. 수업시수 *주석 배점표 참조	**60**	**30**	**60**	**30**	수업팀
				3. 수업강좌수 *주석 배점표 참조	**60**	**30**	**60**	**30**	수업팀
				4. 수업만족도조사(강의평가)결과 * 주석 배점표 참조	100	50	120	**50**	수업팀
		온라인강의 *선택		-1과목 온라인 강의(블렌디드강의 포함) 제작 및 개설 시 10점 단, 동일과목으로 다음연도에 점수 반영이 되려면 강의콘텐츠를 새로 촬영 및 제작을 해야함	20	20	20	**20**	수업팀
		특별강의 *선택		-평생·국제교육팀 1강좌 10점 -특강1회5점, 연2회 인정	10	0	10	**0**	각부서
	교육지도	학생상담		1. 학생 상담 지도 *필수 -1회 15점(연구트랙은 10점), 학기당 1인 1회 실시 후 입력	30	20	30	**20**	학생지원팀
				2. 상담개선 *선택 학생 상담 개선을 위한 워크숍 참여 1회 5점	10	10	10	**10**	학생생활상담센터
		특별지도	논문 지도 *필수	1. 논문지도 -석·박사 1명 5점 (연 4회 인정) -학사 1명 2점(상한 5명) -증명서제출	20	0	20	**0**	수업팀 대학원교학팀
			캡스톤디자인*필수	2. 캡스톤디자인 지도 팀당 10점	20	10	20	**10**	교육혁신센터
			창업지도 *필수	3. 창업 지도 -교내 창업 관련 지도 1건당 5점 -교외 창업 관련 지도 1건당 10점	20	10	30	**10**	창업지원센터

변경후

			취업지도 *필수	4. 취업 지도 취업자 1인 성공시 20점	40	0	100	**0**	취업진로팀
			역량프로그램 지도 *필수	- 보충학습지도 1건당 5점 - 비교과 프로그램 1건당 20점 최대 40점 - 자율학기 교과목 지도 1건당 50점/30점/20점/10점 (학점베이스)	100	40	100	**40**	각부서
		학생행사참여지도 *필수		-(감점) 불참 1건당 -5점 감점	0	0	0	**0**	학생지원팀
	교육행정	학내교육행정참여 *필수		-(감점) 불이행 1건당 -5점 감점	0	0	0	**0**	각부서
		대학행사 참여 *필수		-(감점) 불이행 1건당 -5점 감점 -성교육 미참석 1회당 –5점 감점	0	0	0	**0**	각부서
		학교 및 학과 홍보 *필수		-본인증명서 제출 -1건당 10점, 연2회 인정 -63세트랙은 1건당 20점	20	0	100	**0**	입학홍보팀
배점한도					600 (**130**)	300 (**70**)	800 (**110**)	150 (220)	

3호,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건

직전 이사회(2022. 12. 26.)		금번 이사회(2023. 01. 19.)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이 사 장	이계안		
이 사	이대화		
이 사	김지훈		

4호, 기타안건

임대보증금 환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의 건

◉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유

1.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들이 퇴거하게 되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2022학년도에 예상보다 많은 기업들이 퇴거하게 되면서 임대보증금 반환 예산이 350만원 부족한 상태
   - 현재 임대보증금 환급 예산 잔액 : 660,000원
   - 2022학년도 퇴거 기업 보증금 합계 : 4,160,000원
   - 부족 예산 : 3,500,000원
2. 자금계산서 계정과목은 동일 관 내에서 전용이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환급" 계정으로 전용할 수 있는 계정이 없음
3. 따라서 예비비를 사용해야만 "임대보증금 환급" 계정에 예산을 추가반영할 수 있음
4. 창업보육센터의 2022학년도에 환급해야하는 임대보증금 지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기업명	사무실	계약기간	퇴거(예정)일	퇴거여부	보증금(원)
디자인하루	가동 106호	21.12.15. ~ 22.12.14.	22.12.31.	퇴거완료	2,000,000
예원	가동 210호	22.01.01. ~ 22.12.31.	22.12.31.	퇴거완료	1,080,000
위드올	가동 212호	22.06.01. ~ 22.12.31.	22.12.31.	퇴거완료	1,080,000
2022학년도 퇴거 기업 보증금 합계					4,160,000

※ 임대보증금은 해당 기업의 관리비를 납부해야만 반환해주고 있음(위 기업들은 아직 미납상태)
※ 해당 기업이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대학은 납부하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있음